

#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204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15. 11.  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## 1. 의결주문

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폐지이유

- 가. 본 조례는 환경보전과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보전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조성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8. 10. 1. 제정(조례 제1639호)·시행하여 왔으나,
- 나. 제4조(기금의 용도)에서 조례의 목적이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개선사업,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환경개선사업의 지원, 환경보전 우수기관·단체·개인에 대한 시상을 목적으로 규정되어있으나
- 다.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개선사업,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환경개선사업, 각종 환경보전 시상에 환경보전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는 등 지속적인 기금운용의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함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예산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성별/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2) 규제심사 : 원안 동의 / 해당사항 없음

(3) 입법예고

(가) 예고기간: 2015. 10. 8. ~ 10. 28.

(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##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참고 1**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**제22조(조례)**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